

- '96~'97 영업의 수익 자료 제출
- 소송자료 제출(2건)
  - 가양5단지 박무용소송 1-319p(전체서류)
  - 거여지구(오중환) 사건 화해조서(전체서류)
- 상계2지구 3단지 감리일지, 업무담당관 일지

서울특별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후단중 “다른 분과위원회의”를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재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276호(1996.3.30.)로 개정된 서울특별시조례 제3244호 서울특별시세조례중 개정조례(1995.12.30.) 부칙 제2항중 “1998년 12월 31일”을 “200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본문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를 “본인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동항본문단서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을 “국가유공자들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1항본문중 “직계·존비속”을 “직계·존비속(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를 “본인을 위하여”로 하고, 동조동항본문단서중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을 “장애인들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본문중 “설치의무없이”를 “주차장설치의무없이”로, “의하여 설치한 노외주차장중”을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때”를 “경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사용하는 때(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한한다)”를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그 부분에 한한다)”로 하며, 동조제3항중 “사용하는”을 “사용하거나 매각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본문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를 “5세대”로,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로 하고, 동조제2항본문중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를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3445호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 부칙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경과규정) 국가유공자에 우뚝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명의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4기통 이하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더라도 제2조제3항제1호의 승용자동차로 보아 1998년 제1기분 자동차세부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장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례) ①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에 착공을 하고,